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2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 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3
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허성무의원안) ...	11
3.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17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8. 25.
- (3) 회 부 일 : 2025.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1항) ○ 세액공제 대상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에 출연 ③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④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신 설>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공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송언석의원안)</u>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윤준병의원안은 ②의 경우 50%) ○ 적용기한: <u>2028. 12. 31.</u>(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u>2035. 12. 31.</u>(박수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협력중소기업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2항) ○ 요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공제율: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 요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 공제율: 투자금액의 1%(대), 3%(중견), 7%(중소)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시 세액공제(제8조의3제4항)	○ 시행일: 공포한 날(송언석의원안) 2025. 1. 1.(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인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송언석의원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요건: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중고자산 무상 기증 ○ 공제율: 해당자산 시가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84), 이인선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60), 송언석의원안 2025. 2. 20. 발의(의안번호 8311), 이만희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27), 박수현의원안 2025. 5. 12. 발의(의안번호 10481), 김상훈의원안 2025. 7. 9. 발의(의안번호 11359),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7), 허성무의원안 2025. 8. 25. 발의(의안번호 1232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각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2030년 말까지 5년(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또는 2035년 말까지 10년(박수현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김상훈의원안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그 외에 협력중소기업 자

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 및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조의3제1항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요건: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7% - 적용기한: 2013. 12. 31.
2014년	- 적용기한 연장: 2016. 12. 31.
2017년	- 공제율 상향: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연장: 2019. 12. 3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2020년	- 공제대상 신설: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시행연도	내 용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적용기한 연장: 2022. 12. 31.
2022년	- 공제대상 신설: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2025. 12. 31.

동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주요사업은 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¹⁾,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²⁾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³⁾ 및 농어촌상생 협력기금사업⁴⁾, ③ 상생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⁵⁾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사업⁶⁾, ④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지원사업⁷⁾이 있음.

□ 현행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무상임대 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를 무상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차례 적용기한 연장이 이루어져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1)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보증기관은 이를 기초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2) 대기업이 협력재단에 협력중소기업과 지원사업을 지정하여 출연금을 내고, 협력재단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5)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예정임

- 현행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동 세액공제는 1981년 말 세법개정으로 1982년부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써,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임.

- 다음으로 현행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는 산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유형	내용	공제율
상생협력기금 출연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 -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10%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	3%

유형	내용	공제율
수탁기업 시설 투자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 는 시설에 투자	1%(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연구시험용자산 무상 기증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 험용 자산 등의 자산을 대학 및 그 밖의 교육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	10%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⁸⁾는 2024년 실적치 기준 약 294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됨.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0	0	0.8	0.5	0.5	0.2	0.7	0.7
법인세	179	202	212	329	408	294	279	285
합계	179	202	213	329	409	294	280	286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 공제,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7%) 공제, 시설 등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10% 공제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임.

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허성무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1항) ○ 세액공제 대상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에 출연 ③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④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신 설>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목적 출연금 공제율 인상 ○ 대상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단,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 20%)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8조의5) ○ 공제대상: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현 행	개정안
<신 설>	○ 공제율: 10% ○ 적용기한: 2028. 12. 3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안 제8조의6) ○ 특례내용: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2028. 12. 31.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시행일: 2026. 1. 1.

* 허성무의원안 2025. 8. 25. 발의(의안번호 12329)

-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①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해당 출연금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율인 10%의 2배인 20%를 적용하도록 하고, ②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③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목적 출연금에 대하여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원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해당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 한도 내에서는 100% 손금산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⁹⁾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외에 ‘기부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¹⁰⁾)’가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중복지원의 효과를

9)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text{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times 10\text{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모두 합치면 출연금액의 104.5%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댄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세액감소 효과 산정]

(단위: %)

항목	적용내용	세액감소율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10%
기부금 손금산입 효과 (「법인세법」 제24조)	출연금액 전액 손금 산입 (기준 소득금액의 10% 한도)	최대 25%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효과 (「조특법」 제100조의32)	출연금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약 60% (300% * 20%)
합계		총 104.5% 95%(법인세)+ 9.5%(지방소득세)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둘째, 안 제8조의5는 내국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를 공제하려는 것인데, 스마트공장의 구축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물류·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 있는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8조의6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36조¹¹⁾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

11)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데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익금불산입 규정은 불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54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 먼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협력중소기업 및 수탁기업의 자산 및 시설 확충을 도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향상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영업이익률 격차는 줄어들었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23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음.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지표]

(단위: %p,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이익률 차이	1.5	1.3	2.0	2.6	3.6	3.7	1.4	1.3	3.5	1.7	0.5
임금격차	53.8	53.2	54.5	54.9	56.2	53.1	55.5	57.8	54.7	53.6	53.7
연구개발비 비중	18.2	17.6	18.5	19.0	17.4	18.0	18.7	19.4	19.8	19.3	17.2

주 1) 영업이익률 차이(%p) = 대기업 영업이익률-중소기업 영업이익률

2) 임금격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3) 연구개발비 비중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e-나라지표

[민간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연구개발비	625,634	688,344	715,067	735,998	808,076	894,213	942,968
대기업	398,038	438,236	446,658	451,694	491,394	551,706	606,503
(대기업증감률,%)	20.4	10.1	1.9	1.1	8.8	12.3	9.9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103,691	114,751	125,041	130,899
(중견기업증감률,%)	13.0	5.8	6.2	1.8	10.7	9.0	4.7
중소기업	70,069	74,883	80,048	79,341	85,251	94,227	79,525
(중소기업증감률,%)	6.7	6.9	6.9	-0.9	7.4	10.5	-15.6
벤처기업	66,840	79,272	86,497	101,272	116,681	123,239	126,042
(벤처기업증감률,%)	6.1	18.6	9.1	17.1	15.2	5.6	2.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각 년도)

개정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출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동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협력이 고용증대 효과, 산업 생태계 안정화 효과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적 수준의 상생협력 도출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하고,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를 인상 조치가 기업의 출연 여부, 출연금 규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음.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지

원이 협력기업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임금 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영여건의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 지출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내국세 수입이 법인세 감면액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²⁾.

셋째, 연구시험용 시설의 무상기증을 유도하여 산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외에 ‘기부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13)’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

12)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482억원인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이 추정한 추가 내국세 징수액은 약 665억원임.

13)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 제100조의32¹⁴⁾)’가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중복지원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출연금액의 104.5%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댄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세액감소 효과 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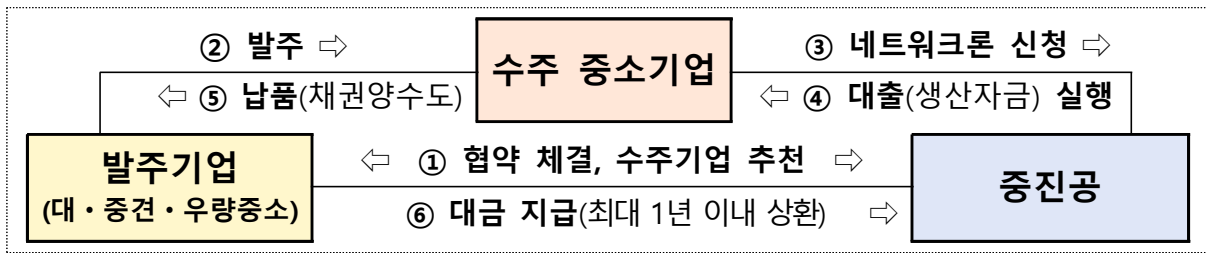
항목	적용내용	세액감소율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10%
기부금 손금산입 효과 (「법인세법」 제24조)	출연금액 전액 손금 산입 (기준 소득금액의 10% 한도)	최대 25%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효과 (「조특법」 제100조의32)	출연금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약 60% (300% * 20%)
합계		총 104.5% 95%(법인세)+ 9.5%(지방소득세)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둘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주기업인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발주기업인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협력하여 발주금액의 80%까지 365일 이내 단기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관계형 정책금융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95억원 증가한 1,395억원에 달함.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2% 확대된 155.9억원임.

또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 비용은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1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위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